

#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

제정	1991. 1.22.	규칙 제111호
변경	1995. 6.14.	규칙 제147호
	2005. 8.10.	규칙 제455호
	2007. 5.29.	규칙 제490호
	2012. 3.28.	규칙 제596호
	2020.11.23.	규정 제82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4 규정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 교수를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대학원장, 사회체육대학원장, 훈련학생처장과 5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11.23.>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. <개정 2020.11.23.>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.

**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수에 대하여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연구 및 학술활동 실적
2.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 실적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5조의2 (심사자료)**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

1.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(별지 1호 서식)
2. 임용기간내의 논문 등 연구실적물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**제6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. 날인한다.

**제8조(간사) <삭제>**

**제9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부 칙(제111호, 1991. 1. 22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1995. 6.14. 제147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5. 8. 10. 제455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07. 5. 29. 제490호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5조의 2 제1호 정년보장임용 평정표는 2012. 4. 1일 정년보장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제5조의 2의 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당시 부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**부 칙(2012. 3. 28. 제596호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 (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교무처장”으로, “훈련처장”을 “훈련학생처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교학처장”을 “교무처장”으로 한다.

[별지 1]

## 정년보장임용교원 심사평정표

심사 대상자	○ 소속 ○ 직 급 ○ 성 명	심사위원	(서명)			
구 분 평정영역	평 정 항 목	실적 및 의견	평 정 점 수			
			A	B	C	D
1.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(10점)	① 인성과 품성(5점)					
	② 근무상황(성실성 등)(5점)					
2.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(45점)	① 연구실적의 양(논문, 도서) (30점)					
	② 연구비 수주 실적(10점)					
	②-1 경기지도실적(전문실기) (10점)					
	③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(5점)					
	③-1 국제대회심판 및 임원활동 (전문실기, 전공실기)(5점)					
3. 교수(강의) 능력과 지도실적 (25점)	① 강의평가 실적(10점)					
	② 동아리지도 실적(5점)					
	③ 석·박사 지도교수 및 심사 위원 활동 실적(10점)					
	③-1 국가대표(후보)배출 실적 (전문실기)(10점)					
4. 기타사항(20점)	① 교내·외 위원회(단체) 위원(임원) 활동실적(5점)					
	② 연구보고서 참여 실적(5점)					
	③ 취업지도실적(10점)					
5. 특별가점(10점)	① 상벌관계(10점)					
합 계	점					
	적격여부	적 격	부적격			

※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적용하여 평균 70점 이상이면 적격 처리

[별지 2]

## 정년보장임용교원 심사평정 기준

구 분	평 정 항 목	평정방법 및 기준	비 고			
1.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(10점)	① 인성과 품성	A(5점):우수, B(3점):보통, C(1점):미흡				
	② 근무상황(성실성 등)	A(5점):우수, B(3점):보통, C(1점):미흡				
2.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(45점)	① 연구실적의 양(논문, 도서) (논문:학진이상 학술지)	[이론분야, 전문실기-비계약제]	해당년도 실적			
		구 분		A(30점)	B(25점)	C(20점)
		계약제		600%이상	500%이상	400%이상
		비계약제		400%이상	300%이상	200%이상
		연구교수		700%이상	600%이상	500%이상
	[전문실기-계약제]	A(30점) : 계약조건 20%이상 달성 B(25점) : 계약조건 10%이상 달성 C(20점) : 계약조건 1개항목 달성				
	② 연구비 수주 실적	A(10점) : 5천만원 이상 B(7점) : 1천만원-5천만원 미만 C(4점) : 1천만원 미만, D(0점):미수주	해당년도 실적			
	②-1 경기도도실적(전문실기)	훈련처 비교우위평가기준을 적용하되, A(10점) : 150점이상, B(7점) : 100점이상 C(4점) : 50점이상, D(-5점) : 50점미만	"			
	③ 국제학술대회 발표	A(5점) : 5회이상, B(3점) : 3회이상 C(1점) : 1회이상, D(0점) : 미발표 ※1인:100%, 2인:70%, 3인:50%,4인:30%	"			
	③-1 국제(내)심판 또는 임원 활동 실적	최고배점 5점만점(1회당 1점 인정)	"			
3. 수업(강의) 및 학생지도 실적(25점)	① 강의평가 실적	A(10점) : 4.0이상, B(7점) : 3.5이상 C(4점) : 3.5미만	해당년도 평균실적			
	② 동아리지도 실적	A(5점) : 2개이상, B(3점) : 1개이상 C(1점) : 1개미만	"			
	③ 석·박사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활동실적	A(10점) : 석사 2명 또는 박사 1명이상 지도교수 B(7점) : 석사 1명이상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 2회이상 C(4점) : 심사위원 2회미만	"			
	③-1 국가대표(후보)배출 실적 (전문실기)	최고배점 10점을 만점으로 하되, 국가대표 1인당 2 점, 국가대표후보/상비군 1인당 0.5점	해당년도 실적			
4. 기타사항 (20점)	① 교내·외위원회(단체) 위원(임원) 활동 실적	A(5점) : 5회이상, B(3점) : 3회이상, C(1점) : 3회미만	해당년도 실적			
	② 연구보고서 참여 실적	A(5점) : 3회이상, B(3점) : 2회이상 C(1점) : 2회미만	"			
	③ 취업지도 실적	A(10점) : 3명이상, B(7점) : 2명이상, C(4점) : 2명미만	이론분야(명) 전문실기(%) (해당년도 평균실적)			
	③-1 취업지도 실적 (전문실기)	A(10점) : 20%이상, B(7점) : 10%이상, C(4점) : 10%미만				
5. 특별가점(10 점)	① 상벌관계	A(10점) : 대통령이상표창, B(5점) : 장관이상표창, C(3점) : 총장이상표창, D(-5점) : 경징계, E(-10점) : 중징계	재직 중 실적			

